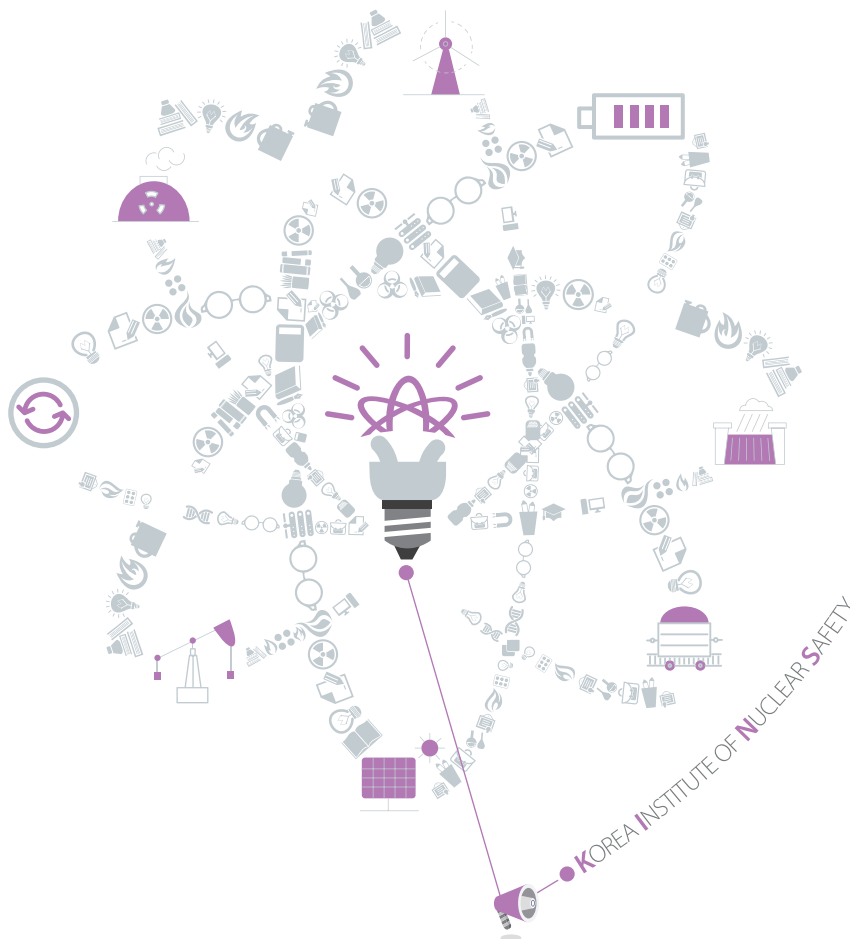


방사성동위원소 등 ... 사용관련 기타 신고서류 작성 매뉴얼 ...

2019.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방사선애로기술지원 컨택센터



- 이 안내서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사용변경신고를 제외한 다양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을 설명하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안내서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비롯하여, 사용폐지신고까지 모든 서류의 작성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이 안내서의 2019년 12월 현재 유효한 원자력안전법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으로서 법령개정 또는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 절차도 변경되게 되어 이 안내서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신 사용자께서는 『방사선애로기술지원 컨택센터』 (080-004-3355)에 의견을 주시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30일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관련 기타 신고서류 작성 매뉴얼

목 차

1. 기타 신고신청 서류의 종류 및 내용	1
2.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4
3. 지위 승계 신고	20
4.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변경·해임 신고	24
5. 원자력관계사업 등 사용 개시, 중단, 재개 신고	32
6. 양도·양수 신고	38
7. 원자력관계사업 등 사용 폐지 신고	41
8. 원자력관계 허가증 등 재발급	49

1

기타 신고신청 서류의 종류 및 내용

경미한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내용 변경

* 상호, 대표자, 수량감소, 오기 정정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필요 제출 서류	세부 내용
1.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변경전후 대비표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3. 사용신고 확인증 원본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재발급신청서, 재발급사유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4. 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대표자에 대하여 작성 및 제출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5. 감량을 입증하는 서류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해외로 수출 또는 반출한 경우 : 수출승인서 또는 반출승인서 ※ 수출 승인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발급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 방사선발생장치를 자체폐기한 경우 : 자체폐기 사진 ○ 방사성동위원소를 위탁폐기 한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인수의뢰서
6. 사업자등록증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지위승계신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

필요 제출 서류	세부 내용
1. 지위승계 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2. 변경전후 대비표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3. 사용신고 확인증 원본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재발급신청서, 재발급사유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4.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법인의 경우)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의 경우 - 합병 계약서 사본 - (법인의 경우)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인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해임

필요 제출 서류	세부 내용
1. 방사선안전관리자 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 선임인 경우
3. 재직증명서	○ 선임인 경우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선임인 경우
5.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수료증	○ 선임인 경우
6. 업무 분장	○ 안전관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용개시, 중단신고

사용 개시, 중단, 재개

필요 제출 서류	세부 내용
1. 사용 개시, 중단, 재개, 폐지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2. 방사선원에 대한 조치 서류 (중단의 경우)	○ 방사선원에 대한 봉인 및 접근제한 조치 등
3. 사용 개시, 중단, 재개, 폐지신고서 (중단의 경우)	○ 예상 중단기간 및 재개계획서

양도양수신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신고, 허가 기관에 양도

필요 제출 서류	세부 내용
1. 양도양수 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2.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사용폐지신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폐지

필요 제출 서류	세부 내용
1. 사용폐지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2. 허가등 취소·사업(사용) 폐지의 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2. 사용신고 확인증 원본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재발급 신청서, 재발급사유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3. 방사선원에 대한 조치 서류	○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조치 서류 - 방사선발생장치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발급 -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 방사선발생장치를 자체폐기한 경우 : 자체폐기 사진 ○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조치서류 - 방사성동위원소를 해외로 수출, 제조사 반송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발급 -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 방사성동위원소를 위탁폐기 한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인수의뢰서

신고확인증재발급 신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필요 제출 서류	세부 내용
1.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2. 재발급사유서	
3. 지방세 납부 확인서	○ 과세대상이 4종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판매 (RG사용신고자인 경우) 또는 4종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판매 (RI사용신고자인 경우)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1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대상 업무

- ◎ 변경사항 중에서 다음 항목만 변경이 되었다면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로 처리한다.
-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분없이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
- 1)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를 모두 완료한 기관이 다음 사항의 변경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2가지 신고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다.
 - 2) 다만, 변경사항 중 방사선발생장치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 3) 반대로, 변경사항이 방사성동위원소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 ◎ 경미한 사항 변경과 지위 승계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항 목		변경사항 상세내용	신고 사항
상호 변경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명 변경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명 변경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변경, 자체적으로 사업소명 변경 등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법인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상호 변경	○ 지위 승계 신고
대표자 변경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명 변경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명 변경 - 대표자 교체(○○○ 대표 → □□□ 대표) - 대표자 추가, 제외 (1인→2인, 3인→1인 등)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법인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 지위 승계 신고
사업소 소재지 주소 변경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소재지 주소 변경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소재지 주소 변경 -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사업소 소재지 이전 없이 주소만 변경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수량감소	방사성 동위원소	○ 사용중인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조치서류 - 방사성동위원소를 해외로 수출 또는 반출(제조사 반송 및 해외수리)하였을 때 -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른 기관에 양도하였을 때 - 방사성동위원소를 위탁폐기 하였을 때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 양도양수신고(양도하는 경우) ※ 수출 또는 반출의 경우, 한국 원자력안전재단에 수출승인신고
	방사선 발생장치	○ 사용중인 방사선발생장치를 감량 - 방사선발생장치가 고장 또는 노후화되어 방사선발생장치를 자체폐기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허가/신고기관에 양도하거나 판매사에 반납 - 방사선발생장치를 해외 업체에 수출 또는 반출	
신고된 내용 및 성능의 오기 정정		○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신고확인증에 기재된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 ○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업무처리 담당자가 실수로 오기하였을 때 ○ 신고가 완료된 이후 설계승인서의 내용이 변경되어 성능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확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사항 발생여부 확인 방법

-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 업무와 준비하여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 경미한 사항 변경과 지위 승계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다.(다만, 지위승계신고서도 함께 제출)

변경 되는 내용 제출(준비)할 서류		공통 사항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신고 내용 (오기) 정정	감량	신고 내용 (오기) 정정	감량	신고 내용 (오기) 정정
필수 서류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서	◎	◎	◎	◎	◎	◎	◎
	변경전후 대비표	◎	◎	◎	◎	◎	◎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최신본) 원본	◎	◎	◎	◎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확인증(최신본) 원본	◎	◎	◎			◎	◎
선택 서류	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RG 감량	감량을 입증서류						
		• 자체폐기사진			○			
		• 수출승인서(또는 반출승인서)			○			
		• 양도양수신고서			○			
	RI 감량	감량을 입증서류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인수의뢰서					○	
		• 수출승인서(또는 반출승인서)					○	
		• 양도양수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					

주의 1) 위 표에서 “◎” 표시는 필수 제출 서류이고 “○”표시는 해당 사항 발생시 제출 서류이다.

주의 2) “필수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서류이고, “선택서류”는 변경 대상 발생시 제출 서류이다.

예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감량 및 대표자 변경이 되었다면, 제출서류는 ①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 ② 변경전후 대비표, ③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확인증 원본, ④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 원본, ⑤ 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⑥ 방사성동위원소 감량을 입증하는 서류중 해당 서류, ⑦ 방사선발생장치 감량을 입증하는 서류중 해당 서류 ⑦ 사업자등록증이 된다.

준비서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내용 요약

필요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시기
1.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서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 방사성동위원소 감량, 방사선발생장치 감량을 포함하여 지위 승계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로 일괄처리
2. 변경전후 대비표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3. 사용신고 확인증 원본	○ 모든 경우에 항상 제출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확인증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 ○ 다만, 사용신고 확인증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주소 변경 : 모두 제출 - 방사선발생장치 수량감소만 되는 경우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만 제출 - 방사성동위원소 수량감소만 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만 제출 ○ 사용신고 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재발급신청서, 재발급사유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제출
4. 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대표자에 대하여 작성 및 제출 - 내국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를 작성하여 제출 - 외국인인 경우 : ①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외국 국적 한국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③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 : 여권사본 + 자국내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자국내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5. 감량을 입증하는 서류	○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조치 서류 - 방사선발생장치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발급 -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 방사선발생장치를 자체폐기한 경우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폐기 사진 ○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조치서류 - 방사성동위원소를 해외로 수출, 제조사 반송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발급 -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 방사성동위원소를 위탁폐기 한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인수의뢰서
6. 사업자등록증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서류 작성 방법

1. RI/RG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필수서류 1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전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다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변경된 대표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 경미한 사항이 여러 개일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한 번에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5. 3.>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법인명(단체명) 기술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대표자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사업소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명 사업장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주소 담당부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소속 부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성명

신고내용	승인번호 또는 허가·인가·지정증 번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좌측 상단에 신고번호 기재 변경사항 변경된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 대표자 변경 (홍길동 ⇨ 김철수) 방사성동위원소 Kr-85 37 GBq × 1 감량 (사용장소 : 기기분석실)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3 mA × 1대 감량 (사용장소 : 품질관리실) 변경사유 대표자 변경, 방사선발생장치의 자체폐기	승인·허가일자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술되어 있는 일자 기재
------	---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2조·제15조·제20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42조·제44조·제45조·제51조·제53조·제60조·제63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 합니다.

2018 년 8 월 1 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인가·지정증(「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2조·제20조·제30조·제35조·제45조·제53조 및 제6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설계승인서(「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76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2조·제15조·제20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42조·제44조·제63조·제69조에 따른 신고: 24개월 2.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51조·제53조·제60조·제76조에 따른 신고: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확인 신고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변경전후 대비표

필수서류2

변경전후 대비표

- ◎ 기존에 신고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전 항목에 작성한다.
- ◎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내용은 변경후 항목에 작성하고, 변경사유란에는 변경된 이유를 작성한다.

변경 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① 신고번호	제12-0000-00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 제22-0000-00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신고확인증 좌측 상단)	- 변경후 신고번호는 공란	
② 상호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	변경된 상호	
③ 소재지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주소	통상적인 경우 변경이 없음	
④ 대표자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대표자명	변경된 대표자 성명	대표자 변경
⑤ 사용목적	RI : 수질분석, 액유추정 RG : 결함검사, 합금 분석	RI : 수질분석 RG : 결함검사	RI : 해당 선원 폐기 RG : 해당 장치 양도
⑥ RG의 종류 및 수량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방사선발생 장치의 종류, 대수 성능 예)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5 mA × 5 120 kV 3 mA × 5 45 kV 0.5 mA × 2 40 kV 80 μ A × 2	감량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성능 예)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5 mA × 4 120 kV 3 mA × 4 45 kV 0.5 mA × 1 45 kV 80 μ A × 2	1층 품질관리실의 장비 1대 자체폐기 2층 분석실의 1대 제조사 반송(해외) 사업소 내(보관장소 : 3층 사무실내 금고)의 장비 1대 타기관 양도 성능정정
⑦ RI의 종류 및 수량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방사성동위원소 종류, 대수 Ni-63 : 555 MBq × 5 Ni-63 : 370 MBq × 5 Co-60 : 3.7 MBq × 2 Am-241 : 1,000 MBq × 2	감량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대수 Ni-63 : 555 MBq × 4 Ni-63 : 370 MBq × 4 Co-60 : 3.7 MBq × 1 Am-241 : 1,100 MBq × 2	1층 품질관리실의 장비 1대 자체폐기 2층 분석실의 1대 제조사 반송(해외) 사업소 외(보관장소 : 3층 사무실내 금고)의 장비 1대 타기관 양도 성능정정
⑧ 기타변경 사항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1	법인사업자로 변경

필수서류3

1.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최신본)
2.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최신본)

- 1)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2) 재발급 사유서
- 3)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illegible]

방사선애로기술지원 컨택센터 080-004-3355_9

4. 대표자 인적사항

선택서류1

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4조 관련)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는 선택서류이다.

※ 기존 대표자에 대한 정보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대표자 인적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4조 관련)	
내국인 대표자	- 성명 : 홍대표 - 주민등록번호 : 190301-1010101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9번지
내국인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
외국인 대표자	- 성명 : 미국대표 - 외국인등록번호 : 190301-5050505 - 국내거소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9번지
외국인대표자	- 성명 : - 여권번호 : - 국내거소지 주소 :
외국국적 한국인	- 성명 : 미국한국대표 - 외국인등록번호 : 190301-5050505 - 국내거소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9번지

○ 외국인 대표자 : 3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 추가 제출

①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 외국 국적 한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 : 여권사본 + 자국내에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1) 아포스티유 또는

(2) 해당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자국내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 대표자인 경우 제출 서류〉

구분	국내거주 외국인	외국국적 한국인	국내 비거주 외국인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사본 + - 자국내에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를 임명) 대표자 : 인적사항 제출 불필요

-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대표자로서 대표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5. 감량을 입증하는 서류

선택서류2

방사성동위원소 감량이 있는 경우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감량이 있는 경우에 제출

-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가 감량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제출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 1)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조치 서류
 - 방사선발생장치를 해외로 수출한 경우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
 -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발급
 -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 방사선발생장치를 자체폐기한 경우 : 자체폐기 사진
 - 2)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조치서류
 - 방사성동위원소를 해외로 수출, 제조사 반송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
 - ※ 수출승인서, 반출승인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발급
 -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른 기관에 양도한 경우 :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 방사성동위원소를 위탁폐기 한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인수의뢰서
- ◎ 감량하는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가 다수인 경우, 방사선발생장치 대수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의 제출 서류의 예

〈수출승인서 사본〉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별지 제4호 사식〕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의뢰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의뢰서〉

2)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의 제출 서류의 예

〈수출승인서 사본〉



〈자체폐기 사진〉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택서류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소 소재지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고서의 상호명, 대표자명, 본점 소재지, 사업소 소재지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첨부한다.

3 RI/RG 사용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작성 방법 상세

1. RI/RG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

- ① 방사성동위원소등 신고사용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이다.
- ②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를 작성할 때에는 기존에 신고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③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항목으로서 신청인이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빈 칸없이 작성해야 한다.
- ④ 만일, 신고서 항목을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서류 적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으로 서 서류에 대한 보완이 발생되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 ⑤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작성예시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기

[illegible]

상세방법

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① 상호

-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명(단체명)을 기술한다. 이 때 상호의 명칭은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중 “-”앞에 있는 명칭과 동일한 명칭이 된다.
- 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사업소명 또한 변경이 되므로, 경미한사항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
- 변경된 내용은 변경전후 대비표 및 신고서“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술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나타나있는 상호명의 규칙〉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란에 표기되는 규칙은 본사명-사업소명의 조합으로 상호가 구성이 된다.
-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전에 본원이 있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현장주재검사팀이 소재하는 경우 상호 표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현장주재검사팀이 된다.
- 따라서, 상호명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란에 표기되어 있는 상호중 “-”앞에 나타나있는 명칭이 된다.
- 예)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현장주재검사팀”인 경우 상호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③ 주소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본사 소재지를 기술한다.
- 본사 소재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사용변경신고 또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시에 변경된 본사 소재지 주소를 현행화 하여 기재하면 된다.

④ 전화번호

- 본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 따라서, 본사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최신의 연락처로 현행화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⑤ 대표자

- 대표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 또한, 대표자 변경 내용은 변경전후 대비표 및 신고서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대표자는 최초 사용신고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case 1) 사업자등록증에 단독대표인 경우, 대표자를 대표자란에 기재한다.
- case 2)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 모두를 대표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case 3) 사업자등록증에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 또는 각자대표 모두를 대표자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인이 선택하여 대표자를 기재하면 된다.

case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를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표자란에 대표자의 직함을 기재한다.

⑥ 생년월일

- 생년월일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모두 기재한다.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최초 사용신고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case 1) 사업자등록증에 **단독대표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생년월일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case 2)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의 생년월일을 기입해야한다.

case 3) 사업자등록증에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 또는 각자대표 모두를 대표자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인이 선택하여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면 된다.

⑦ 사업소명

- 사업소명은 변경전의 사업소 명칭을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변경전후 대비표 및 신고서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변경된 사업소명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기재한다.

case 1)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사업소명은 상호명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case 2)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구분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용하지만, 상호가 본사 상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호명과 동일하게 사업소명을 기재할 수 있다.

case 3)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구분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나타나있는 상호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나타나 있는 상호를 기재한다.

case 4)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고하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 사업소가 지리적(소재지 주소 등)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신고하는 기관의 관리체계상 분리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기관에서 명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⑧ 사업장소

- 사업장소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 사업소의 소재지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되거나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란에 변경전 주소를 기술하고, 변경된 내용은 변경전후 대비표 및 신고서 “변경사항”란에 변경된 내용을 기술한다.

⑨ 전화번호

- 정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검토중 질의사항 및 보완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이고,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완료 이후에는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를 신청한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록하며, 기본적으로 유선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출장 등으로 유선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병행하여 기재한다.
- 따라서, 담당자 전화번호는 항상 최신의 연락처로 현행화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⑩ 담당부서

- 정부나 KINS에서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경미한사항 변경신고를 신청한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명칭을 기재한다.
- 따라서, 담당부서는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신청시에 최신의 담당부서로 현행화하여 신고서를 작성한다.

⑪ 담당자

- 정부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검토중 질의사항 및 보완사항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이고,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완료 이후에는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따라서, 담당자 성명은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⑬ 승인번호 또는 허가·인가·지정증 번호

- 승인번호 또는 허가·인가·지정증 번호란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신고 확인증 번호를 기재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신고확인증 번호를 모두 기재한다.

⑭ 승인·허가일자

- 신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고확인증의 최신본에 표기되어있는 신고일자를 기입한다.

⑮ 변경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소, 대표자명 또는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량감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⑯ 신고인

- 신고인은 대표자가 이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2. 변경전후 대비표

- ① 변경전 내용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② 변경되었거나 변경 예정인 내용은 변경후 항목에 작성한다.
- ③ 변경사유에는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작성예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을 보고 변경전후 대비표를 작성하는 방법 보기

The example shows a 'Change Before and After Comparison Table' for a radiation safety license. The table is divided into 'Before Change' and 'After Change' columns. The 'Before Change' column contains information from the original license, and the 'After Change' column contains information from the updated license. The 'Change Reason' column provides a brief explanation of the changes. Red boxes highlight specific changes, and arrows point to the corresponding rows in the comparison table.

상세방법

변경전후 대비표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번호

- 신고번호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좌측 최상단에서 찾을 수 있다.
- 변경전후 대비표 작성을 위해서 최신의 유효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변경전 항목에는 최신의 유효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좌측상단의 신고번호를 기재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보유한 모든 사용신고확인증의 변경되는 사항을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 변경후 항목은 기재하지 않고, 변경사유도 기재하지 않는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① 신고번호	제12-0000-00호, 제22-0000-00호	-	

② 상호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상호 명을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변경된 상호명을 기재한다.

- 변경된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및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등재되어 상호명을 다음 예시와 같이 조합하여 작성한다.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현장주재검사팀
 ↑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의 상호

- 상호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변경사유에는 변경사항에 법인 분할, 사업영역 분할, 기업이미지 제고, 상호 변경 등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② 상호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	변경된 상호 (KINS-현장주재검사팀)	현장조직 개편

③ 소재지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변경된 소재지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 소재지 주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사업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사용변경신고 대상임으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 변경사유에는 행정구역 개편, 도로명 주소로 변경 등 해당 하는 사유를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③ 소재지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주소	이전할 사업소 소재지 주소	도로명 주소로 변경

④ 대표자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란에는 대표자 변경으로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④ 대표자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변경된 대표자 성명	대표자 변경

⑤ RI 또는 RG의 종류 및 수량

- 변경전 항목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한다.
- 변경후 항목에는
 - 종류 또는 수량이 감소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기재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좌동”으로 기재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란에는 타기관 양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도, 해외 수출, 제조사 반송 등의 사유를 기재한다.

작성 예)

변경전후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⑥ RI의 종류 및 수량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방사성동위원소 종류, 대수 Ni-63 : 555 MBq × 5 Ni-63 : 370 MBq × 5 Co-60 : 3.7 MBq × 2 Am-241 : 1,000 MBq × 2	감량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대수 Ni-63 : 555 MBq × 4 Ni-63 : 370 MBq × 4 Co-60 : 3.7 MBq × 1 Am-241 : 1,100 MBq × 2	1층 품질관리실의 장비 1대 위탁폐기 2층 분석실의 1대 제조사 반송(해외) 사업소 외(보관장소 : 3층 사무실내 금고)의 장비 1대 타기관 양도 성능정정
⑥ RG의 종류 및 수량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성능 예)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5 mA × 5 120 kV 3 mA × 5 45 kV 0.5 mA × 2 40 kV 80 μA × 2	감량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성능 예) [엑스선발생장치] 160 kV 5 mA × 4 120 kV 3 mA × 4 45 kV 0.5 mA × 1 45 kV 80 μA × 2	1층 품질관리실의 장비 1대 자체폐기 2층 분석실의 1대 제조사 반송(해외) 사업소 내(보관장소 : 3층 사무실내 금고)의 장비 1대 타기관 양도 성능정정

3 지위승계 신고

1 지위승계 신고 첨부 서류 및 작성 방법

1. 지위승계 신고서

◎ 지위승계 신고는 신고사용자의 지위를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승계할 때 수행하는 신고이므로 승계하는 신고사용자가 신고 처리하면 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8. 5. 3.>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압축)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승계를 하는 사람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이 허용된 항목으로 반드시 작성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집이 허용된 항목으로 반드시 작성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는 상호의 지점, 공장 또는 분소명 (○○지점, ○○공장, ○○분소, ○○지사, ○○사업소, ○○연구소, ○○센터 등, 부서명칭은 아님)	
		주소 위 사업소명의 위치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승계 대상 지위		☐ 발전용원자로설치자 ☐ 핵연료주기사업자 ☐ 업무대행자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 핵연료물질사용자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 ☐ 연구용원자로설치·운영자 ☒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 판독업무자	
승계내용	☐ 허가 ☐ 지정 ☐ 번호 ☐ 등록 ☒ 신고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합병		

「원자력안전법」 제19조·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4조·제30조·제39조·제43조·제48조·제55조·제86조·제97조·제1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2 지위승계신고 작성 방법 상세

- ① 신고사용자의 지위를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승계할 때의 절차이다.
- ②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승계를 하는 사람 및 승계를 받는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확인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③ 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지위승계 신고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항목으로서 신청인이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빈 칸없이 작성해야 한다.
- ④ 만일, 신고서 항목을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서류 적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으로서 서류에 대한 보완이 발생되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 ⑤ 경미한 사항 변경과 지위 승계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⑤ 지위승계 신고는 지위를 승계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작성예시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8. 5. 3.>

지위승계 신고서

※ 역상이 모두든 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승계를 하는 사람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주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인등록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주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명칭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는 상호의 지점, 공장 또는 본소명 (00지점, 00공장, 00본소, 00지사, 00사업소, 00연구소, 00센터 등, 부서명칭은 아님)	주인등록번호
승계 대상 지위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주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인등록번호
승계 사유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주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인등록번호

승계 대상 지위

승계 사유

원자력안전법, 제19조, 제29조, 제34조,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4조, 제30조, 제33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제86조, 제97조, 제1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뒤쪽 참조

210mm×297mm(복합지(80g/㎡))

국세청

2019년 07월 31일

제천세무서장

국세청

상세방법

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 ① 명칭(본사)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명을 본점의 상호를 기술한다.
-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최신)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③ 대표자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 ④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모두 기재한다.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항목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⑤ 주소(본사)
 -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있는 본점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한다.
- ⑥ 전화번호(본사)
 - 본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 ⑦ 명칭(사업소)
 - 사업소명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명이 사업소명이 된다.
- ⑧ 주소(사업소)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 ⑨ 전화번호(사업소)
 - 담당자 전화번호는 지위승계를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⑩ 신고인
 - 신고인은 대표자가 이 되는 것임으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4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해임 신고

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해임 신고 첨부 서류 및 작성 방법

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 최초 신고 또는 안전관리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신고 한다.
- 따라서, 변경 · 해임란을 공란으로 둔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 설 2014.11.24.>

방사선안전관리자

[☒] 선임
[☐] 변경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상호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사업소(직업장)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명				
사업(직업)장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부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소속 부서		담당자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성명		
허가증번호	제12-00000-00호 또는 제22-00000-00호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교육	
	과장	조OO	신고일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RI 일반	제000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0000년00월00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변경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 · 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 · 해임일자			
	면허증			변경내용 (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 변경 · 해임을 신고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인력의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자격 등록증 포함) 사본 1부 3.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신고

◎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신고는 기존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선임에 대한 란은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 설 2014.11.24.>

방사선안전관리자 $\left[\begin{array}{c} \text{선임} \\ \checkmark \\ \text{해임} \end{array} \right]$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상호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사업소(직업장)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명				
사업(직업)장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부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소속 부서		담당자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성명		
허가증번호	제12-00000-00호 또는 제22-00000-00호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교육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과장	조00	신고일	RI 일반	제000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0000년00월00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변경 ·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 · 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 · 해임일자		기존 인력의 퇴직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자 변경선임	
	과장	조00	0000년 00월00일	0000년00월00일			
	면허증			변경내용 (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조00 → 박00)				
	RI 일반	제000호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 변경 · 해임을 신고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인력의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자격 등록증 포함) 사본 1부 3.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확인 신청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 신고

◎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는 기존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할 때 신고하는 것이므로, 선임에 대한 란은 공란으로 둔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 설 2014.11.24.>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상호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사업소(직업장)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명				
사업(직업)장소 위 사업소명의 위치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부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소속 부서		담당자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성명		
허가증번호	제12-00000-00호 또는 제22-00000-00호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교육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변경 ·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 · 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 · 해임일자		기존 인력의 퇴직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자 해임	
	과장	조00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면허증			변경내용 (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RI 일반	제000호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 변경 · 해임을 신고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인력의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자격 등록증 포함) 사본 1부 3.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확인 신청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만 제출한다.
- ②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 수 있다.
- ③ 취급업무경력은 방사선기기를 해당 사업소에서 취급한 이후로부터 인정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관한 경력확인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2항제3호)	
성명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성명 예) 김OO
생년월일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생년월일 예) 910000
연락처(휴대폰)	유선 :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연락가능 연락처 예) 042-000-0000 휴대폰 :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연락가능 연락처 예) 010-0000-0000
이메일주소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이메일 주소 예) oooooo@kins.re.kr
소속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소속 예) 품질관리팀
직위 또는 직급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직위 또는 직급 예) 대리
취급업무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하는 자의 업무 예)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의 결함검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종류	취급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예) 50 kV 0.5 mA 엑스선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간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시점부터 취급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음 예) 2018.11.11. ~ 현재
OOOOO 주식회사는 상기와 같이 OOO(성명)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OOOO 주식회사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5.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만 제출한다.
- ② 해당 사업소 종업원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 ③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1부를 제출한다.

6. 방사선안전관리자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시에만 제출한다.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한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c.or.kr/>)
- ③ 업무대행자 인력의 경우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7.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

-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별도 서식 없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별 업무 분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2항제4호)

방사선안전관리자 1의 성명	방사선안전관리자 1의 업무 및 역할 예) 1. 안전관리규정 및 기준준수의무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방지조치 3.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방사선안전관리자 2의 성명	방사선안전관리자 2의 업무 및 역할 예)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교육

1.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해임 신고 작성 방법

- ## 작성예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기

방사선안전관리자 ☒ 신고서

계좌번호	계좌이름	제정일자	제정일자	15일
상호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 소재지 주소(가주소를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본인인명	대표자의 성명인명	
사업소(작업장)명	사업등록증 또는 법인세신고서 기재된 사업소명	사업소명	사업소명 또는 사업장명	
사업(업종)명	사업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종류	전화번호	신규등록을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부서	신규등록을 담당하는 담당자 소속 부서	담당자	신규등록을 담당하는 담당자	
허가번호	제12-00000-0000 또는 제28-0000-0000	허가일자	0000년 00월 00일	00월 00일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종		교육	
	과장	조오	신고일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제1 일반	제000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0000년00월00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보·임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신입일자		변경·해임일자		기존 입력의 퇴직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자 변경승인
	과장	조오	0000년 00월00일	0000년00월00일			
	면허종			변경내용 (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조오 → 박00)			
				제1 일반 제000호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방사선안전법 시행령」 별표 제 3호에 따른 인력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경력서 또는 신분 증명서 사본(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사본(자격 등록증 사본 포함)을 제출한다)
2.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한다)
3. **직무분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한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확인
 신청인

210mm×297mm| 백상지 80g/㎡ | 厚發賣場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확인증

*본 글에는 인터넷으로 확인된 정보에 한하여 인용하였으나, 반드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방법

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① 상호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있는 상호명을 기술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번호를 기술한다.

③ 주소

-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있는 본점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한다.

④ 전화번호

- 본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⑤ 대표자

- 대표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⑥ 생년월일

- 신청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모두 기술한다.

⑦ 사업소(작업장)명

- 사업소명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명이 사업소명이 된다.

⑧ 사업(작업)장소

- 사업장소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⑨ 전화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는 방사선안전관리 선임, 변경, 해임 신고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⑩ 담당부서

- 방사선안전관리 선임, 변경, 해임 신고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명칭을 기재한다.

⑪ 담당자

- 방사선안전관리 선임, 변경, 해임 신고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기재한다.

⑫ 허가증 번호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좌측 최상단에 신고번호를 기입한다.
- 최신의 유효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⑬ 허가일자

-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확인증의 최신본에 표기되어있는 좌측하단의 신고일자를 기입한다.

⑭ 선임

- 선임하고자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위, 성명, 선임일자를 작성한다.
- 선임하고자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한 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증 번호를 기입한다.
- 선임하고자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은 하고자 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과정명과 수료일자를 기입한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신고사용자 : 해당 사업소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업무대행자의 인력

⑮ 변경·해임

- 변경·해임을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자의 직위, 성명 및 선임일자를 차례로 기입한다.
- 또한, 변경·해임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자의 소지한 면허증의 종류와 면허증 번호를 기입하고,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변경 또는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 변경·해임일자를 기입한다.
- 사유에는 기존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 선임하는 사유 또는 해임하는 사유에 대하여 서술한다.
- 변경내용에는 해임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이름과 선임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술해 준다.

⑯ 신고인

- 신고인은 대표자가 신고인이 되는 것임으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5

원자력관계사업 등 사업 개시, 중단, 재개 신고

1

원자력관계사업 등 사업 개시, 중단, 재개 신고 첨부 서류 및 작성방법

1. 원자력관계사업 등 개시 신고

◎ 원자력관계사업등의 사업 개시 신고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5. 3.>

원자력관계사업 등 ☒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사업소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명칭		
	주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주소 (우편번호 : 22222)		
신고 내용	원자력관계사업 등의 종류	☐ 핵연료주기사업 ☐ 핵연료물질사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업무대행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 판독업무		
	사업허가연월일 또는 판독업무자 등록연월일	최초 신고를 득한 날로 신고확인증 기재 되어 있는 연월일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	사용을 개시한 날의 연월일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사유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3조·제48조·제55조·제86조·제97조·제115조에 따라 ([] 원자력관계사업 [] 판독업무)의 개시·중단·폐지·재개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검토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원자력관계사업 등 중단 신고

◎ 원자력관계사업등의 사업 중단 신고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로서 공란없이 모두 작성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5. 3.>

원자력관계사업 등 []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사업소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기재된 주소 (우편번호 : 22222)		
신고 내용	원자력관계사업 등의 종류	☐ 핵연료주기사업 ☐ 핵연료물질사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업무대행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 판독업무		
	사업허가연월일 또는 판독업무자 등록연월일	최초 신고를 득한 날로 신고확인증 기재 되어 있는 연월일		
	사업의 개시 · 중단 · 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	사용을 중단한 날의 연월일		
	사업의 개시 · 중단 · 폐지 또는 재개 사유	중단 사유를 기재 예) 안전관리자가 퇴사하여 일시적으로 신고기준 미달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3조·제48조·제55조·제86조·제97조·제115조에 따라 ([] 원자력관계사업 [] 판독업무)의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0000 년 00 월 00 일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검토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원자력관계사업 등 재개 신고

◎ 원자력관계사업등의 사업 재개 신고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어떤 사유로 인해 중단한 후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한 신고하는 절차로서 공란없이 모두 작성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5. 3.>

원자력관계사업 등 []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사업소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기재된 주소 (우편번호 : 22222)		
신고 내용	원자력관계사업 등의 종류	☐ 핵연료주기사업 ☐ 핵연료물질사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업무대행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 판독업무		
	사업허가연월일 또는 판독업무자 등록연월일	최초 신고를 득한 날로 신고확인증 기재 되어 있는 연월일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	사용을 재개한 날의 연월일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사유	재개 사유를 기재 예) 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여 신고기준 충족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3조·제48조·제55조·제86조·제97조·제115조에 따라 ([] 원자력관계사업 [] 판독업무)의 개시·중단·폐지·재개를 신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검토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 해당 선원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① 원자력관계사업 등 중단 신고시에 제출한다.
- ②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별도 서식 없음)
- ③ 조치 전·후 사진을 통해 사용할 수 없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조치나 표지등을 부착한 사진과 보관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예)



* 사용중단 조치내용

1. 방사선 발생장치 #1,#2 생산 Line에서 분리
2. #1,#2 전원 분리조치
3. 사용중단설비 표지 부착 및 랩핑조치

※ 방사선 발생장치 2기를 안전하게 사용중단조치 하였으며 보관장소는 역제충전실 내 보관하고 있으며 역제충전실은 유류설비를 보관 장소로 담당자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기기를 조치하고 표지를 부착

5. 예상 중단기간 및 재개계획서(중단 신고)

- ① 원자력관계사업 등 중단 신고시에 제출한다.
- ② 사업자가 예상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에 대한 중단기간과 이후 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한다.

2 원자력관계사업 등 개시, 중단, 재개 신고 작성 방법 상세

1. 원자력관계사업 등 개시, 중단, 재개 신고서

- ① 신청인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거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1년) 또는 중지했던 사용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 ② 원자력관계사업 개시, 중단, 재개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존에 신고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③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항목으로서 신청인이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빈 칸없이 작성해야 한다.
- ④ 만일, 신고서 항목을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서류 적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으로 서 서류에 대한 보완이 발생되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 ⑤ 개시, 중단, 재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작성예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원자력관계사업 등 개시신고 작성하는 방법 보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5. 3.>

원자력관계사업 등 ☒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서

[별지 제62호서식]
제 12-12345-00 호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소	대표자 성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출발지 주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신고기관 도로명 주소 대표자 출발지 생년월일 1959.02.11	
신고 내용	원자력관계사업 등의 종류 [] 핵연료주기사업 [] 핵연료물질사용 [x]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의 업무대행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 관측업무	상세내역 별첨 사용목적 : 상세내역 별첨 사용장소 : 상세내역 별첨	
	사업 허가연월일 또는 관측업무 등록연월일 최초 신고를 통한 '날로' 신고확인증 기재된 연월일 사업의 개시 · 중단 · 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 사용을 개시한 날의 연월일 사업의 개시 · 중단 · 폐지 또는 재개 사유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3조·제49조·제55조·제66조·제97조·제115조에 따라 ([] 원자력관계사업 [] 관측업무)의 개시·중단·폐지·재개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업무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검토결과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과 확인

210mm×297mm(복합지 80g/㎡(재광용품))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

상 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기관
주 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신고기관 도로명 주소
대 표 자 출발지 생년월일 1959.02.11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
상세내역 별첨
사용목적 :
상세내역 별첨
사용장소 :
상세내역 별첨

신고일자 2018.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일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중서를 발급합니다.
Security Commission
2018년 5월 10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인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대표자의 조치 의무]

1.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신고(별지 제64호 서식) : 변경 전후 신고
 - 신고장, 주소(이전), 사용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 근거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2. 경미한사항변경신고(별지 제4호 서식) :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장 감소, 사업주제(상호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상세방법

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 ① 명칭(본사)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상호명을 본점의 상호를 기술한다.
- ② 전화번호(본사)
 - 본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 ③ 대표자 성명
 - 대표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 ④ 생년월일
 -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있는 본점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한다.
- ⑤ 주소
 -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있는 본점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한다.
- ⑥ 명칭(사업소)
 - 원자력관계사업 등 개시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상호를 기재한다.
 - 원자력관계사업 등 중단 및 재개의 경우 사업소명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명이 사업소명이 된다.
- ⑦ 주소(사업소)
 - 원자력관계사업 등 개시 신고의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 원자력관계사업 등 중단 및 재개 신고의 경우에 주소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 ⑧ 사업허가연월일 또는 판독업무자 등록연월일
 - 최초의 신고를 득한 날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신고일자 를 기재한다.
- ⑨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
 - 사용을 개시, 중단 또는 재개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 ⑩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사유
 - 사용을 중단 또는 재개한 사유를 기재한다.

예)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퇴사하여 일시적으로 신고기준 미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여 신고기준 충족
 ※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
- ⑪ 신고인
 - 신고인은 대표자가 신고인이 되는 것임으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양도·양수 신고

양도·양수 신고 첨부 서류 및 작성 방법

◎ 양도·양수 신고는 양도 기관과 양수기간 별로 신고하는 것이다.
- 따라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를 모두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한건의 양도·양수 신고로 처리하면 된다.

[✓] 방사성물질등
[✓] 방사선발생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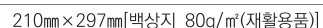
양도 · 양수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0000 년 00월 00일

방사선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인 날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 양도·양수 방사성동위원소의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 양도·양수 신고서에 제시한 방사성동위원소 모델 및 설계승인번호별로 첨부 한다.
- ◎ 설계승인 도입 이전의 장비는 설계승인서가 없어도 된다.
 - ※ 설계승인서가 없을 경우, 카탈로그를 제출한다.(설계승인서 제출시, 카탈로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튜브타입이 정정된 경우 예전 설계승인서와 현재 설계승인서를 제출한다.

-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허가기관이나 신고기관에 양도하거나 다른 허가기관이나 신고기관으로부터 양수하였을 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양도·양수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존에 신고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③ 신고서 별지 제105호서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항목으로서 신청인이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빈 칸없이 작성해야 한다.
- ④ 만일, 신고서 항목을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서류 적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으로 서 서류에 대한 보완이 발생되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 ⑤ 양도·양수 신고는 양도·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방사선애로기술지원 컨택센터 080-004-3355_39

상세방법

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① 상호

- 신청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명을 기술한다.

② 대표자

- 대표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③ 생년월일

- 생년월일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모두 기재한다.
- 신청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주소를 기술한다.

④ 주소

- 신청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주소를 기술한다.

⑤ 전화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는 양도양수 신고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⑥ 허가증·신고확인증번호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좌측 최상단에 신고번호를 기입한다.
- 최신의 유효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⑦ 발행연월일

-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확인증의 최신본에 표기되어있는 좌측하단의 신고일자를 기입한다.

⑧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 양도·양수 하고자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를 기입하는 란이다.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확인증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 양도·양수 하고자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를 기입한다.
- 또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구조기준 「완전방호형」, 「캐비닛형」, 「무인격리형」, 「휴대개방형」을 기재한다.
- 아울러, 튜브가 여러개 장착된 방사선발생장치가 존재하므로 튜브타입을 병행하여 기재한다.

⑨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량 및 고유번호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과 대수를 기술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고유번호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시리얼 번호를 기재한다.
※최초에 방사성동위원소를 도입하는 기관으로서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⑩ 양도인

- 양도인은 양도하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 또한, 양도하는 법인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⑪ 양수인

- 양수인은 양수받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 또한, 양수받는 법인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7

원자력관계사업 등 사업 폐지신고

1

원자력관계 사업 폐지신고 첨부 서류 및 작성방법

1. 원자력관계사업 등 폐지 신고서

◎ 원자력관계사업 등 폐지 신고는 신고사용자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5. 3.>

원자력관계사업 등 ☐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증 등재된 상호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사업소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신고 내용	원자력관계사업 등의 종류	☐ 핵연료주기사업 ☐ 핵연료물질사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업무대행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 판독업무						
	사업허가연월일 또는 판독업무자 등록연월일	최초 신고를 득한 날로 신고확인증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연월일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	사용을 폐지한 날의 연월일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사유	사용 폐지의 사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3조·제48조·제55조·제86조·제97조·제115조에 따라 (☐ 원자력관계사업 ☐ 판독업무)의 개시·중단·폐지·재개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검토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 허가등 취소사업(사용) 폐지 신고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16. 8. 8.>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법인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사업장 주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에 기재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전화번호	담당하는 담당자
담당부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성명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번호	제12-0000-00호 제22-0000-00호	발행일자	0000년 00월 00일	
취소·사망·폐지·해산일자	0000년 00월 00일			
취소·사망·폐지·해산 당시 소유한 방사성물질	종류	신고 당시 소유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수량	신고 당시 소유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량		

「원자력안전법」 제9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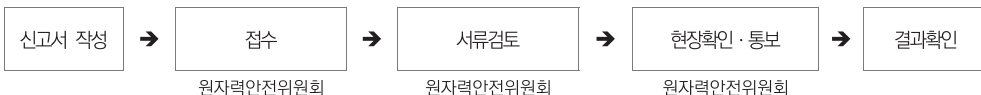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 등에 관한 조치사항 1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사항 1부 3.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사업폐지 당시 보유한 방사성동위원소등에 관한 조치사항

-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의 제출서류 :
 - ① 방사성동위원소를 다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 ② 원자력환경공단을 통해 방사성동위원소를 영구 폐기할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인수의뢰서 사본 (위탁폐기의뢰서 사본)
 - ③ 방사성동위원소를 해외로 수출(또는 반출)한 경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통한 수출승인서 사본 (반출승인서 사본)
-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의 제출서류 :
 - ①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 ② 방사선발생장치를 자체 파기할 경우에는 자체폐기 보고서(방사선발생장치 자체 분해, X-ray 선관 분리, 파손한 사진등)
 - ③ 방사선발생장치를 해외로 수출(또는 반출)한 경우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을 통한 수출승인서 사본 (반출승인서 사본)

1)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의 제출 서류의 예

〈수출승인서 사본〉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인수의뢰서〉

1)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의 제출 서류의 예

〈수출승인서 사본〉



〈자체폐기 사진〉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확인증 원본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확인증 원본을 대신 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
 1)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2) 재발급 사유서
 3)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지명세 납부 확인서

날짜	기관	원	과목	세종	과외인원	합	출구번호	과제번호	합
입금신청번호									

신청인(법인명): _____ 주선인(법인명): _____

주선인(법인명, 외국법인)등록번호: _____

과외세명: 8종 중앙인민행정청 시종, 총체 (핵심행정청명칭) - > 118

과제번호: _____

세종	과외명	과외인원	납부 일	합
등록과제명	원	원	원	원
과	원	원	원	원

위 금액에 납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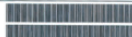
2018년 11월 16일



오 산 사

담당자

연락처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www.action.go.kr 및 www.kissaction.go.kr의 증명
 발급내역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증명서 발급일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일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따라, 본 증명서로 증명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일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일 이후에

44_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https://rais.kins.re.kr>

2 원자력관계사업 등 사업 폐지신고 작성 방법 상세

- ① 신고사용자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 ② '원자력관계사업 등 폐지 신고서'와 '허가등 취소·사업(사용) 폐지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존에 신고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확인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③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원자력관계사업 등 폐지 신고서) 및 별지 제106호서식(허가등 취소·사업(사용) 폐지의 신고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항목으로서 신청인이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빈 칸없이 작성해야 한다.
- ④ 만일, 신고서 항목을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서류 적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으로서 서류에 대한 보완이 발생되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 ⑤ 폐지 후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등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폐지 신고의 법적 처리기간은 24개월이나, 소지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처분계획 미흡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신고 후 수일 내 수리된다.
※ 폐지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결과 신고는 15일이다.

작성예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기

1. 원자력관계사업 등 폐지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5. 3.>

원자력관계사업 등 [] 개시, [] 중단, [] 폐지, [] 재개 신고서

[별지 제62호서식]

제 12-12345-00 호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4개월
본사	명칭 사업자등록증 등재된 상호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소	대표자 성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명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주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연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연년월일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연년월일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신고 내용	원자력관계사업 등의 종류 [] 핵연료주기사업 [] 핵연료물질사용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의 업무대행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 판매업무	사업허가연월일 또는 판매업무 등록연월일 최초 신고를 통한 날로 신고확인증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연월일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사유 사용 폐지의 사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43조, 제51조, 제62조, 제69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3조, 제48조, 제55조, 제63조, 제97조, 제115조에 따라 ([] 원자력관계사업 [] 판매업무)의 개시·중단·폐지·재개를 신고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접수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검토결과 통보 → 결과 확인
210mm×297mm(복합지 80g/㎡(광활용종))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신고확인증

상 호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기관
주 소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신고기관 도로명 주소
대 표 자 : 홍길동 생년월일 : 1959.02.11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

상세내역 별첨

사용목적 :

상세내역 별첨

사용장소 :

상세내역 별첨

신고일자 : 2018.05.10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발령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신고증에 하첨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Security Commission
2018년 5월 10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인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대표자의 조치 의무]

1. 방사성동위원소사용변경신고(별지 제64호 서식) : 변경 전에 신고
 - 신고할, 주소(이전), 사용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 근거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2. 경미한사항변경신고(별지 제4호 서식) :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할 장소, 사업주체(상호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2. 허가등 취소·사업(사용) 폐지의 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16. 8. 8.>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법인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상호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담당부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허가종 또는 신고확인증번호	제12-0000-00호 제22-0000-00호	발행일자	0000년 00월 00일 (최종일자)	
취소·사망·폐지·해산일자	0000년 00월 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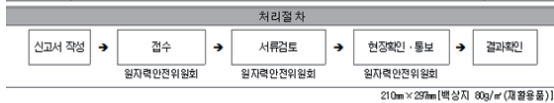
취소·사망·폐지·해산 종류 신고 당시 소유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당시 소유한 방사성물질 수량 신고 당시 소유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량

「원자력안전법」 제9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사용)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0000년 00월 0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증

첨부서류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 등에 관한 조치사항 1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사항 1부 3. 허가종 또는 신고확인증(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62호서식]

제 12-12345-00 호

(앞 쪽)

방사성동위원소사용신고확인증

상 호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기관
 주 소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신고기관 도로명 주소
 대 표 자 : 홍길동 생년월일 : 1959.02.11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

상세내역 별첨

사용목적 :

상세내역 별첨

사용장소 :

상세내역 별첨

신고일자 : 2018.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발령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신고증(제12345호)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Security Commission
 2018년 5월 10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인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대표자의 조치 의무]

- 방사성동위원소사용변경신고(별지 제64호 서식) : 변경 전에 신고
 - 신고장, 주소(이전), 사용장소 등이 변경된 경우
 - 근거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 감미환사용변경신고(별지 제4호 서식) :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장, 장소, 사업주체(상호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상세방법

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1. 원자력관계사업 등 폐지신고서

① 명칭(본사)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상호명을 본점의 상호를 기술한다.

② 전화번호(본사)

- 본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③ 대표자 성명

- 대표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④ 생년월일

- 신청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모두 기술한다.

⑤ 주소(본사)

-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있는 본점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한다.

⑥ 명칭(사업소)

- 명칭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명이 사업소명이 된다.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명이 "000-000"일 경우 "-"이후에 있는 명칭이 사업소명이 된다.

⑦ 주소(사업소)

- 주소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⑧ 사업허가연월일 또는 판독업무자 등록연월일

- 최초의 신고를 득한 날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신고일자를 기재한다.

⑨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연월일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폐지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⑩ 사업의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사유

- 사용을 폐지한 사유를 기재한다.

예) 방사선안전관리자가 퇴사하여 일시적으로 신고기준 미달

⑪ 신고인

- 신고인은 대표자가 신고인이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2. 허가등 취소·사업(사용) 폐지의 신고서

① 법인명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상호명을 본점의 상호를 기술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술한다.

③ 주소

-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있는 본점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한다.

④ 전화번호

- 본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⑤ 대표자

- 대표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⑥ 생년월일

- 신청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모두 기술한다.

⑦ 사업소명

- 사업소명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명이 사업소명이 된다.

⑧ 사업장 주소

- 사업장소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⑨ 전화번호

- 전화번호는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⑩ 담당부서

- 담당부서는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명칭을 기재한다.

⑪ 담당자

- 허가등 취소·사업(사용)폐지의 신고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기재한다.

⑫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번호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좌측 최상단에 신고번호가 있다.
- 최신의 유효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⑬ 발행일자

-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신고확인증의 최신본에 표기되어있는 좌측하단의 신고일자를 기입한다.

⑭ 취소·사망·폐자·해산일자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더 이상하지 않아 사업을 폐지하는 일자를 기입한다.

⑮ 취소·사망·폐자·해산 당시 소유한 방사성물질(종류)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를 기술한다.

⑯ 취소·사망·폐자·해산 당시 소유한 방사성물질(수량)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량을 기술한다.

⑰ 신고인

- 신고인은 대표자가 신고인이 되는 것이므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8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

1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 첨부 서류 및 작성 방법

1.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

- ◎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신청해야 한다.
- ◎ 신고사용자가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또는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 를 통해 기재해야할 사항을 알 수 있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등재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인	사업소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	담당부서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소속 부서
		담당자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성명
사업장소	위 사업소명의 위치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전화번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허가증 등의 종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확인증 종류		
허가 · 지정 · 신고일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확인증의 좌측하단에 있는 신고일자		
신청내용	변경일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중앙 하단에 있는 최근 변경일자		
	변경허가 · 승인 · 신고번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좌측상단에 있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기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에 따라 허가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청인은 반드시 대표자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서명 혹은 기관직인을 날인)

첨부서류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 · 신고확인증) 1부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 허가증 · 지정증 · 신고확인 증 작성 및 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 허가증 · 지정증 · 신고확인 증 수령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신고확인증 또는 사유서

- 훼손한 경우 : 신고확인증
- 분실한 경우 : 사유서

재 발 급 사 유 서

1. 법인명 : 신고확인증에 등재된 상호

2.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3. 재발급 내용

분 류	내 용	비 고
허가(신고)종류		
허가(신고)번호		
사용목적		
허가(신고)일자		

4. 재발급 사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육하원칙에 따라 분실사유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작성요령 :

- ①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합니다.
- ② 당해연도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확인 증명을 첨부합니다.
지방세 납부에 관한 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 세무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담당자가 질 것이며, 차후 허가증(신고확인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은 반드시 대표자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서명 혹은 기관직인을 날인)

3. 당해연도 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 국립대학등 비과세 대상기관은 제외

예) 지방세 납부확인서

문서확인번호



지방세 납부확인서

납세 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과세연도	월	기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	----	---	----	----	----	------	---	----	-------	------	---

전자납부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과세대상:

4종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판매 [엑스선발생장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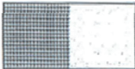
과세표준:

세목	지방세	가산금	납 부 일
등록면허세	원	0 원	2017년 01월 26일
계	원	0 원	

위 금액의 납부를 확인합니다.

2018 년 01 월 16 일

오 산 시



담당자

전화번호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민원24(minwon.go.kr)의 발급 문서확인메뉴를 통해 문서확인번호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2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 작성 방법 상세

- ① 신고사용자가 신고확인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한다.
- ②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및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③ 신고서 별지 제115호서식(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항목으로서 신청인이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빈 칸 없이 작성해야 한다.
- ④ 만일, 신고서 항목을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서류 적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으로서 서류에 대한 보완이 발생되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 ⑤ 신고사용자 원본 제출을 요하는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의 경우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때, 재발급 사유서와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작성예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기재된 상호 대표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1111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소속 부서 담당자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성명 사업장 주소 위 사업소명의 위치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전화번호 :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허가증 등의 종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확인증 종류 허가·지정·신고일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확인증의 좌측하단에 있는 신고일자	
신청인			
신청내용			
변경일자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변경허가·승인·신고번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 사용신고확인증 중앙 하단에 있는 최근 변경일자 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좌측상단에 있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기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7조에 따라 허가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청인은 반드시 대표자명의로 작성하고 대표자 사인 혹은 기관직인을 날인)

첨부서류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지정증·신고확인증) 1부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서류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증·지정증·신고확인증 작성 및 발급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증·지정증·신고확인증 수령 신청인			

210mm×297mm(복합지 80g/㎡ (광용종용))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명 (단체명) :

대표자 :

개업연월일 :

사업장 소재지 :

본점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제조업 서비스업

발급사유 : 대표자변경

2019 년 07 월 31 일

사실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 예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

상세방법

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 ① **법인명**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상호를 기술한다.
- ②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③ **대표자**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을 모두 기재한다.
- ④ **생년월일**
 - 생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모두 기재한다.
- ⑤ **주소**
 -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한다.
- ⑥ **전화번호**
 - 본사에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 ⑦ **사업소명**
 - 사업소명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상호명이 사업소명이 된다.
- ⑧ **담당부서**
 - 담당부서는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소속의 부서 명칭을 기재한다.
- ⑨ **담당자**
 -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기재한다.
- ⑩ **사업장소**
 - 사업장소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확인증에 등재되어 있는“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 ⑪ **전화번호**
 - 전화번호는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신청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⑪ **허가증 등의 종류**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 등 신고확인증의 종류를 기입한다.
- ⑫ **허가지정-신고일자**
 -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고확인증의 최신본에 표기되어있는 신고일자를 기입한다.
- ⑬ **변경일자**
 - 기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중앙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최근 변경일자를 기입한다.
- ⑭ **변경허가승인-신고번호**
 - 기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좌측 상단에 있는 신고번호를 기재한다.
- ⑮ **변경사항**
 - 기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다. 모를 경우, 공란으로 둔다.
- ⑯ **신고인**
 - 신고인은 대표자가 신고인이 되는 것임으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